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 인권 규정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1. 본 규정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 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본교의 교육목표인 "세계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창조적 글로벌 리더의 육성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학생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 2. 학생권리보장
- 가)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관 런 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언어, 장애, 용모 등의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② 학교는 제 ①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다)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한다.
- 3.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규정 적용의 원칙】

- 1. 학생은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2. 학부모(또는 법적대리인)은 가정에서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규정에 관심을 갖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 3. 교사는 학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한다.
- 4.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규정의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개인에 차별을 두지 않게 적용한다.
- 5.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합의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 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8조【조언】

-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상담】

-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 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주의】

-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

- 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 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훈육】

-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수 있다.
-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사	::수업방해행동 학생 가 수업시간 중 2회 상 조언, 주의 등의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주:	방식으로 주의를 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계량 겨저)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감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감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	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	라 명확히 설정 가	<u>.</u>

-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 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 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다)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라)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이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생활안전지원부에 신고하고 학교의 장에게 보고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 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4.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훈계】

-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지 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나) 성찰하는 글쓰기
-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3조【보상】

-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 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사항】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 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7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생활안전지원부장, 해당 학년부 장으로 하고 간사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한다.
- 3.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담임교사와 관련교사를 참석시켜 학생의 신상 및 사안에 관한 제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본 협의회는 심의 전에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6. 학교장은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처분 내용에 대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및 '학교 교육 분쟁조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가)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치료조치 및 보호방안
- 나)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와 처분 방안 등

제5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9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배려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쓸 뿐 아니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 이용 및 환경】

-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 한다.
-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선생님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2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신뢰를 쌓는다.

제23조【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언어 또는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 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 가)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담당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나) 학교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안전지원부(상 담)교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 5. 폭력 가해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제24조【이성교제】

- 1.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2.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3.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3.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의 등록은 매년 3월 초에 동아리 승인 신청서를 생활안전지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 2. 승인 신청서에는 동아리의 명칭, 활동 목적, 활동 내용, 지도교사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3. 동아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간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4.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학기 초 지정된 요일, 시간, 장소를 이용해 실시하도록 한다.
- 5. 평일 동아리 활동은 자율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며, 외부 행사나 활동 참여를 위해 부 득이하게 평일 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지도교사, 생활안전지원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

- 를 받아 생활안전지원부에 제출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지도 교사의 인솔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 교사는 당일 사감교사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6. 각 동아리는 각종 경시대회 및 학교축제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1년 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 7.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는 동아리를 해체할 수 있다.
- 가) 동아리 회원이 7인 미만이거나 1학기 동안 3회 미만의 정기 모임을 가져 그 활동 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때
- 나) 불법 집회로 3회 이상 적발될 시
- 다)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경우
- 라) 불법 활동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지도교사가 해체를 건의할 때
- 8. 학기 중 해체된 동아리는 같은 학기에서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제26조 【여가활동】

- 1.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2.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3.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체력단련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실의 이용 시간과 규칙을 잘 준수한다.
- 4.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7조【용의복장】

- 1. 용모
- 가) 문신이나 피어싱 등의 신체 훼손 행위를 제외한 각종 장신구 패용은 자유이다.
- 나) 기타 용모와 관련해 생활 인권 규정 위반과 관련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 2. 복장
- 가) 정규수업 시간 중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한다.(이하 정규수업시간이란 등교부터 종례까지를 말한다.)
- 나) 동복과 하복에는 정장과 캐주얼 교복이 있으며, 모두 착용이 가능하다.
- 다) DRESS CODE의 복장 규정

	정장 교복							
구 분	남 자	여 자						
동 복	재킷A, 조끼, 넥타이 지정Y셔츠, 동복바지	재킷A, 조끼, 지정 Y셔츠, 스커트 혹은 동복바지, 스타 킹, 넥타이나 리본						
춘추복	지정 Y셔츠, 조끼, 동복바지, 넥타이	지정 Y셔츠, 조끼, 스커트 혹은 동복바지, 스타킹, 넥타이나 리본						
하 복	지정 하복상의, 하복바지,	지정 하복상의, 하복스커트 혹은 하복바지. 살색 스타킹 또는 양말, 리본						

	캐쥬얼 교복							
구 분	남 자	여 자						
동 복	재킷B, 조끼, 지정Y셔츠, 동복바지	재킷B, 조끼, 지정 Y셔츠, 스커트 혹은 동복바지, 스타킹						
춘추복	지정 Y셔츠, 조끼, 동복바지	지정 Y셔츠, 조끼, 스커트 혹은 동복바지 스타킹						
하 복	지정 T-SHIRTS 하복상의, 하복바지	지정 T-SHIRTS 하복상의, 하복스커트 혹은 하복바지, 살색 스타킹 또는 양말 (넥타이 착용은 선택사항)						

- 라) 교복 유형별 착용 기간은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마)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기상을 고려하여 교복 완화 및 추가를 할 수 있다.
- 바) 여학생의 경우 치마 또는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3. 신발 및 양말
- 가) 신발은 학생화나 운동화, 슬리퍼 착용이 가능하다.
- 나) 양말은 항상 착용한다.

제28조【학급 내 주번 활동】

학생의 학급 내 도우미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비품 정리 정돈, 실내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2. 지정된 청소구역의 청결 및 정돈상태를 확인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아침청소에 동참하며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 5. 학급 도우미 활동으로 연간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제29조【외박】

- 1. 주중 외박은 경조사나 병원 입원, 치료 등으로 담임교사의 외박 확인과 담임교사의 생활관 사감 교사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 2. 학과가 종료되는 16:00부터 가능하며 시험기간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시간을 학과가 종료된 시간으로 본다.
- 3. 주말 외박을 하고 귀교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 이후에 귀교할 때에는 사전에 생활관 사감 교사에게 학생과 학부모가 연락하는 경우 가능하다.

제30조【외출】

- 1. 본교는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로 주중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2. 해외대학,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학원증 등)를 구비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해서 주중 일과 후 학원 외출이 가능하다.
- 3.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 준비물과 개인 품위 유지 및 산책을 통한 재충 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6시30분까지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다.(단, 외출 후 정해진 시간에 귀교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외출 제한 및 향후 주말학교 신청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는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해 학원 외출

이 가능하다.

제31조 【병원 외출 절차】

- 1.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병원 방문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 2. 보건실에서 수령한 병원방문확인서를 지참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방문 후 외출승인을 받고 보안실에 제출해야 한다.
- 3. 증상의 경중에 따라 병원의 진료차트 복사본 또는 병원 처방전을 제출하고 외박으로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병원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 4. 귀교 후 병원방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방문확인서에는 반드시 해당병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 5. 병원방문 확인서에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을 받아오거나 병원방문 신청 후 약국을 방문 하여 확인증을 받아온 경우 허위 외출로 처리하며, 허위 외출시 규정에 따라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에 회부된다.

제32조 【행사에 의한 단체 외출 절차】

동아리나 학생 단체가 주중이나 주말에 외출을 할 경우, 미리 담당 동아리 교사나 담임교 사에게 보고 후 해당 교사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전에 결재를 받으면 단체 외출이 가능하다.

제33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아 있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34조【출결사항】

- 1. 결석: 학교에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 는 출석으로 처리하며, 상벌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가)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예: 소년 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 동안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 대회 참가, 현장(체험)학습 및 현장실습, 교환학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학교장은 이 외에 부모 및 조부모의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마)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
- 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 조(학생의 징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기간
- 사)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 아)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구분	인정사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해당				
공결		공적의무, 공권력 행사	사유				
		경기, 경연대회참가, 현장실습,	기간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경조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73年	사망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u>ō</u>	교장은 이 외에 부모 및 조부모의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출석 인정 1일과 같이 간주)					

- 2. 결석의 구분: 결석은 병결과 기타결, 미인정결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다음 각항에 따른다.
- 가) 병결로 처리되는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을 것

- 나) 기타결로 처리되는 경우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결석하고 담임교사 확인 의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 다) 미인정결로 처리되는 경우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 또는 퇴학 징계 전 가정학습기간
- 라)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014.4.16 자퇴, 2015.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2014.3.2~2014.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014.3.20.~2014.4.16.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제2절 교외생활

제35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경기외고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 동한다.
- 6.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의 복용 및 흡입을 금한다.
- 8.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36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 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 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 3.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습관, 태도, 이상한 행동 등

제3절 정보통신

제3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8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휴대전화와 각종 전자기기는 항시 소지와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업 시간, 자기주도학습시간에 허락 받지 않은 사용은 금지한다.
- 2. 교내에 비치된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39조【회위】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0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1조 【금지활동】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2조 【협의·지원 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주변 지역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5. 학생 복지 및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건의 사항
- 6. 기타 학칙과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3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생활안전지원부의 검토절차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 생한다.

제44조【학생자치회 활동】

- 1. 학생자치회 조직과 참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자치회 조직
 - ① 학생회장단(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1학년총학생부회장), 학생행정위원회, 학생 입법위원회, 학생사법위원회, IB 학생위원회, 생활관자치위원회로 구성된다.
 - ② 학생행정위원회는 교내 각종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학생입법위원회는 여론수렴을 통한 교칙 개선을, 학생사법위원회는 교내 질서 유지 및 교칙 적용을, IB 학생위원

회는 IB 및 글로벌홀 관련 업무를, 생활관 자치위원회는 생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학생자치총회를 통해 각각 학생 자치기관의 역할을 한다.

③ 학생행정위원회, 학생입법위원회, 학생사법위원회, IB 학생위원회, 생활관자치위원 는 한 학기에 2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

제45조 【학생행정위원회 임원 구성과 역할】

- 1. 학생행정위원회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행정위원장 1인(2학년 1인), 부위원장 1인(2학년 1인)
- 나)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 2. 학생행정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 가)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회의록, 인력배치표, 축제 기획안 및 시간표 작성 부서
- 나) 대외활동부: 외부 인사 초청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다) 문화체육부: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
- 라) 문화예술부 : 축제 등 학생들의 문화생활과 관련된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
- 마) 여론소통부 : 학교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부서
- 바) 재정경제부: 학생자치활동 예산 총괄 및 교내 사업 추진하는 부서
- 사) 학생활동지원부: 동아리활동과 관련한 모든 행사를 전담하는 부서
- 3. 학생행정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교내•외 학생 참여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한다.
- 나)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책임을 갖는다.
- 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한다.
- 라)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통한 학교 이미지 제고와 사회봉사 활동 주도 한다.

제46조 【학생입법위원회 임원 구성과 역할】

- 1. 학생입법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 나) 각 학급의 회장이 다수결에 의해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학년별 1명)을 선출한다.
- 다) 각 학급의 회장은 4개부의 부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2. 학생입법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 생활 규정 개정안 제출
- 나) 학생자치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다) 학생자치회 예산심의
- 라) 학생자치회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마)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3. 학생입법위원회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여론조사부: 교칙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및 통계처리 담당
- 나) 생활캠페인부: 학기별 캠페인 활동 기획 및 전개 담당
- 다) 교칙개정부: 입법의 귀 관리 및 학교 교칙 개정 담당
- 라) 문서관리부: 입법위원회 활동 정리 및 회의 진행 담당

제47조 【학생사법위원회 구성과 역할】

- 1. 학생사법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사법위원회 위원장 1인(2학년 1인), 부위원장 2인(2학년 1인,1학년 1인), 부원을 두며, 부원의 수는 학생자치회 집행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한다.
- 나) 학생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임 학생사법위원장,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며, 부원은 학생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 2. 학생사법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 생활 관리, 지도, 감독
- 나) 학생 벌점 관리
- 다) 학생 자치회 참여
- 라) 학생 생활 및 각종 행사 질서 지도
- 마) 학생, 교사 생활관 간의 소통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3. 학생사법위원회 부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자치법정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총괄
- 나) 생활규정부: 부여된 벌점 관리 및 벌점 상황 전달을 통한 학생 생활 개선, 토론의 장 주최
- 다) 내외소통부: 학생, 선생님, 생활관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교칙 관련 설문조사 실시
- 라) 문서관리부: 사법위원회 관련 각 종 행사 및 회의를 통해 발생하는 문서의 관리 및 정리

제48조 【IB 학생위원회 구성과 역할】

- 1. IB 학생위원회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위원장단은 위원장 1인(2학년 1인)과 부위원장 2인(2학년 1인, 1학년 1인)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장단 외 구성원은 각 부서별 부장 1인, 부원 2~3인이다.
-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 학년 초 전체 IB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부서별 부장 및 차장은 전임 위원장단과 부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며, 부서별 부원은 전·현 임 위원장단이 공식절차를 거쳐 협의 후 선발한다.
- 2. IB 학생위원회 부서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규율부 (Department of Justice) : IB 내 자치규율 제정 및 관리, 글로벌홀 내 환 경 개선
- 나) 소통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 : IB 학생들과 선생님 및 국내반 간의 소통
- 다) 학업부 (Department of Academics) : 교내 IB 경시대회 및 기타 학업 관련 업무
- 라) 미디어아트부 (Artifex) : 경기외고 아이비 홍보 영상 및 포스터 제작
- 3. IB 학생위원회 역할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IB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책임
- 나) IB반과 국내반간의 융화 유도

- 다) IB 내 학생 참여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 라) 국제 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한 글로벌 학교로서의 입지 형성

제49조 【생활관자치위원회 구성과 역할】

- 1. 생활관자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생활관자치위원회 위원장 1인 (2학년)
- 나) 생활관자치위원회 부위원장 2인 (2학년 남자 1명, 여자 1명)
- 다) 부서별 위원 2인 (부장 2학년, 차장 1학년)
- 라) 기타 위원 16명 이상 18명 이하로 구성
- 2. 생활관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생활관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 나) 생활관 학생 참여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
- 다) 생활지도교사 보조활동: 07:30~07:55 지도교사와 교복지도 보조 및 O.D 카드 부과
- 라) 생활관협의회에서 지정한 항목에 대해 O.D 카드 부과
- 마) 기타 생활관에서의 학생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바) 혜택

- ①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혜택은 회장단과 생활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생활관 관장이 결정한다.
- ② 각 호 규정은 생활관 내에서만 해당하며, 벌점 부과 시 지도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 권한

- ①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O.D 카드(-1)를 부과할 수 있다. O.D 카드 3장(-3) 부과시 지도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단체생활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은 지도교사에게 인계한다.
 - 음식물 취식 및 반입, 금지 물품 반입, 호실 이동, 수건 적재 및 외부 반출, 23:50 이후 세안 및 샤워실 이용, 복장지도 불이행
- ②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은 생활관 규정에 대해 생활관협의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은 매주 금요일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취합하여 담당 생활 지도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
- ④ 생활관 자치위원회는 생활관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이익 증진을 위해 행사를 기획, 진행할 수 있다.

아) 운영 및 회의

- ① 생활관 자치위원회 운영과 활동은 생활관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정례회의
 - 정례회의는 1달에 두 번 개최한다. 단, 시험 전 한 달은 진행하지 않는다.
 - 새 집행부 결성 및 층장, 방장에 대한 논의, 생활관 자치위원회 규정안 개정에 관한 논의, 기타, 회장단이 필요로 한 의결 사항 등
 -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정족수는 정원의 2/3 이상 참석, 과반 찬성으로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장단은 즉시 담당 생활지도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의 개최를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 회의 내용은 담당 생활지도교사에게 보고한다.

- ③ 임시회의
 - 회장단 또는 위원의 1/5 이상의 요구 시, 2주 이내 개최한다.
- 의결은 본 조 2항 정례회의 논의 사항과 같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단은 즉시 담당 생활지도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의 개최를 2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 회의 내용은 담당 생활지도교사에게 보고한다.
- 3. 생활관자치위원회의 부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규정관리부: O.D 카드 관리, 생활관 규정 관리, 건의 사항 관리 및 피드백
- 나) 기획홍보부: 생활관 내 이벤트 운영 및 홍보
- 다) 소통안전부: 생활관 관련 설문조사 시행 및 소셜미디어 페이지 운영
- 라) 시설관리부: 생활관 시설 건의 페이지 관리, 시설 관련 건의 사항 관리

4. 부칙

- 가) 위원장단 선발
- ① 선발 1개월 전 선발 내용(자격, 지원방법 등)을 게시판에 고지한다.
- ② 게시판 고지와 접수는 학생자치위원회에서 한다.

선발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참여한다.

선발위원은 지원서에서 드러난 자격조건, 성실성, 직무이행능력, 책임감 등을 평가해 정원의 2배수를 1차 선발한다.

선발위원은 1차 선발된 지원자의 지원서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 나) 위원 선발
- ① 선발 1개월 전 선발 내용(자격, 지원방법 등)을 게시판에 고지한다.
- ② 게시판 고지와 접수는 생활관 자치위원회에서 한다.
- ③ 선발위원은 생활관 자치위원회에서 맡되 최소 3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선발위원은 지원서에서 드러난 자격조건, 성실성, 직무이행능력, 책임감 등을 평가해 정원의 2배수를 1차 선발한다.
- ⑤ 선발위원은 1차 선발된 지원자의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 다) 자격상실에 대한 투표

대상은 회장단을 포함한 전체 위원으로 한다. 업무 태만으로 자격 상실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전체 위원 2/3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한다.

제50조【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 1.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방식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학생자치회의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 한다.
- 나) 학생자치회의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부회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다)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2. 학생자치회 총학생회장 · 부회장 선거관리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선거 관리: 총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의 투·개표 관리를 위하여 '학생자치회 총학생 회장·부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부름)를 두며 선관위는 다음과 같

- 이 구성한다.
- ① 위원장: 1명(전년도 입법, 사법, 행정, IB위원 4명 중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 ② 부위원장 : 1명(위원장이 위촉)
- ③ 위원: 전년도 입법,사법,행정, IB위원 4명씩 각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나) 선관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지닌다.
- 다) 투·개표 관리: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하여 비밀 투표를 하며 개표는 생활안전지원부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의 책임 아래 진행한다.(온라인시스템이 사용 불가한 경우 투표는 선관위에서 정한 투표용지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하며 개표는 생활안전지원부 학생자치회 담당교사 및 위원장의 책임 아래 개표를 한다.)
- 라) 후보 등록: 피선거권을 가진 자가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후 보자등록신청서와 서약서, 추천장,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선 관위에 제출한다.
 - ① 입후보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회장은 2학년에, 부회장은 2학년 또는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생회를 겸직할 수 없음. (단, 학급회장에 당선된 경우 총학생회장 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경우 두 직위 중 하나의 직위는 박탈 됨.)
 - 벌점 14점 미만의 전(全)학년에 걸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마) 기호 배정: 선관위의 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입후보자가 직접 추첨하여 기호를 결 정한다.
- 사) 간접 선거: 당선된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학생 선도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당선의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는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의 절차를 학생입법 위원회에 이관하여 간접 선거로 총학생회장·부회장을 선출한다.
- 아) 선거운동 기간: 선거 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후 4일 이상, 7일 이내에 선관위 위 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자) 선거 운동 방법: 선거 운동 방법은 선관위의 규정에 따라 합동 소견 발표와 게시물로 하며, 입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합동으로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은 기호, 성명, 사진, 소견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부착할 수 있다.
- 차) 당선: 개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선자가 결정된다.
 - 각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당선이 확정된다.
 - 단일 후보인 경우 찬반으로 투표하되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때 당선이 확정된다.
 -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당선자를 공고한다.
- 카) 당선의 무효: 선관위 위원장은 임명되기 전에 당선자가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도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회장 선출을 대의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 3. 학생입법위원회 위원(학급회장 · 학급부회장) 선출 규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자격: 학생입법위원회 위원(학급회장·학급부회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학급 원으로서 행실이 바른 자
 - ② 전(全)학년에 걸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나) 시기: 학생입법위원회 위원(학급회장·학급부회장)의 선출 시기는 매 학기초로 한다.
- 다) 임기: 학생입법위원회 위원(학급회장·학급부회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라) 자격상실: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 마) 보궐선거: 정·부반장이 유고 시에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4. 학생사법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자격 : 학생사법위원회 위원 후보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행실이 바르고 책임감이 강한 자
 - ② 전(全)학년에 걸쳐서 선도처분이나 벌점 40점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나) 시기: 임명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 다) 임기: 임기는 학년제로 한다.
- 라) 자격상실: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 마) 보궐선거: 학생사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원이 유고 시에는 즉시 학생사법위 원회의 협의를 거쳐 새로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5. IB 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자격: IB 학생위원회 위원 후보의 자격 요건의 다음과 같다.
 - ① 각 학년의 4반(1학년 3, 4반)(IB) 학생
 - ② 행실이 바르고 책임감이 강한 자
 - ③ 전(全)학년에 걸쳐서 선도처분이나 벌점 20점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나) 시기: 임명 시기는 매 학기 초·중으로 한다.
- 다)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학년제로 한다.
- 라) 자격상실: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매 학기말 국제교육부와 위원장단이 각 위원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다음 학기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 마) 보궐선거: 위원장, 부위원장, 혹은 부원의 유고 시에는 즉시 IB 학생위원회 전체 협의를 거쳐 새로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생활관자치위원회 위원 임명 규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가)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선발 시점 기준, 경고카드 5점 이하인 학생
 - ②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③ 행실이 바르고, 책임감 강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한, 공정성을 가진 성실한 학생
 - ④ 위원장의 경우 총 학생회단, 위원은 사법위원회 및 IB 위원회와 겸임 불가
- 나) 생활관 자치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활관 자치위원회원 구성원 내 투표로 선발한다.
 - ② 선발 절차와 방법은 생활관 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③ 선발 위원은 생활관 관장, 생활관 부장, 생활관 사감팀장, 학생자치위 위원장단 등으로 구성하다.
 - ④ 결원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학생자치위원회 위원장단과 담당 생활지도 교사는 협의 통해 선발을 결정한다.
 - ⑤ 선발 절차와 방법은 부칙에 따른다.

- 다)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의 선발은 위원장단과 담당 생활지도교사 간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마련한다. 선발 절차와 방법은 부칙에 따른다.
 - ② 층장의 선발은 생활관 자치위원회 회장단과 담당 생활지도교사의 협의로 결정한다.

라) 자격상실 및 충원

- ①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 회장단과 담당 지도교사의 협의로 결정
 - 위원의 업무 태만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회장단은 담당 생활지도교사와 협의 후 부칙에 의거하여 투표로 결정한다.
 - 제 73조에 의거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원장단의 통보일부터 자격을 상실하고, 회장단은 담당 생활지도교사의 통보일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 결원의 충원 시, 회장단은 담당 생활지도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 37조 6.에 의거 선발하다.
 - 자격 상실 시, 생활관 자치위원회에서 지급한 물품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 자치위원회를 상징하는 물품은 착용과 사용을 금지한다.
- ① 스트라이크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생활관 자치위원회를 비방, 조롱하는 경우
- 생활관 자치위원회 규정안에 있는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경고장 한 번에 2개 부여 가능)
- 부서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부서 부장 혹은 부원이 신고 가능)
- 확인 답장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답장하지 않는 경우
- 사전 통보 없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약속 시간을 기준으로 1분 미만은 1 장, 그 이상의 경우 10분당 1장씩 부과
- 지시 불이행 시, 즉시 스트라이크 부과
- 스트라이크 3회 시 자격 상실
- 사정 불문하고 활동에 4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자격 상실

제51조【집행위원회】

- 1. 학생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임 학생사법위원장,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며, 부원은 학생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 2. 학생사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원의 유고 시에는 즉시 학생사법위원회의 협 의를 거쳐 새로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2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 안을 편성하여 학생입법위원회에 통보하고, 학생입법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생입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생지도 (OG와 GG제도)

제1절 생활지도

제54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2. 매월 1회 학교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3. 실험 ·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기숙사 사생 수칙 및 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교외 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경찰관서(군포경찰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 활동을 실시한다.

제56조【생활 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8항 (2011.3.18. 일부개정)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일체의 체벌을 포함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은 절대 금지하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별 훈육·훈계의 방법을 사용한다.
- 2. 체벌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학생의 품위나 인격권 등을 손상시키는 언어적 폭력, 모욕감, 협박·위협 등 폭력에 준하는 행위'를 말하여 이런 체벌 대신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에 준하여, 본교 상벌점제 규정에 의해 과다 벌점 학생 교육 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별 훈육·훈계의 방법을 사용한다.
- 3.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의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 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

제2절 시 상

제58조【종류】

본교 학생에게 수여하는 다음 각 호의 상은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1.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이사장상, 학교장상, 학과우수상, 학교운영위원회장상, 3개년 우등상 등
- 2. 표창부문 : 공로상, 표창장(봉사, 모범, 선행, 도덕적인성, 창의인재부문), 3개년봉사상, 3개년생활과모범상
- 3. 근면부문 : 3개년 개근상
- 4. 특별상 : 교내 · 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9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60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상신 한다. 단, 졸업사정 시 외부상은 사정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1조【학력부문】

- 1. 교과우수상
- 2. 이사장상 : 1-1학기부터 3-2학기까지 전 과목 등급 평균 석차 1등인 학생
- 3. 학교장상 : 1-1학기부터 3-2학기까지 전 과목 등급 평균 석차 2등인 학생
- 4. 학과최우수상 : 1-1학기부터 3-2학기까지 전 과목 등급 평균 석차 1, 2등을 제외하고 각 학과에서 가장 우수한 자
- 5. 학교운영위원회장상 : 졸업시 수여되는 각종 외부상 수여 후 전 과목 평균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 6. 학업 우수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업 우수상이 수여된다.
 - 1) 3개년 우등상 : 3개 학년 매 학기 전 교과 4.5등급 이내인 자
 - 2) 1개년 우등상 : 3학년 1개년 매 학기 전 교과 4.5등급 이내인 자

제62조【표창부문】

표창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수여한다.
- 2. 표창장 : 매 학기(7월, 12월) 수여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준 자

를 대상으로 담임 교사, 교과담당 교사, 생활관 교사 등 전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수여 한다(봉사, 모범, 선행, 도덕적인성, 창의인재부문)

- 3. 3개년봉사상, 3개년모범상 (졸업시 수여)
-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 대상자의 수를 각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63조【근면부문】

개근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 · 입학생이나 상 ·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4조【특별상】

교내·외 행사 결과 우수한 자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65조【기타】

기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절 OG와 GG제도

제66조【운영원칙】

- 1.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제)의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운영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2014.09.01)에 따른 학교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율적 협의를 통해학생생활인권 규정을 수렴하여 2015년 3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 2. 경기외고 생활안전지원부는 OG제도(Out of GAFL)와 GG제도(Good GAFLian)의 7단계 시스템을 적용,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3. 생활안전지원부는 담당교사 및 학생사법위원이 부여한 OG와 GG카드의 누가기록을 관리하며, 단계별 통계 결과를 공지 후, 7단계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학생생활의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 4. OG와 GG제도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고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사안 예방 및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OG와 GG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OG와 GG용 카드를 사용한다.
- 나)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다) OG와 GG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를 활용한다.
- 라) OG제도 시행은 학칙에 규정된 징계 이하의 내용이거나 규정된 내용이지만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의 생활지도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한다.
- 마) OG제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학칙에 의해 별도의 징계 근거가 될수 있다.

제67조 【OG와 GG 카드의 종류와 기능】

- 1. 전 교사는 항상 OG와 GG카드를 소지하여 교내 · 외 학생 생활을 지도한다.
- 2. 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OG(Out of GAFL)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GG(Good GAFLian)카드로 구분한다.

제68조 [OG 카드의 활용]

- 1.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 2.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안전지원부 담당교사 또 는 학생사법위원에게 제출한다.

제69조【OG 제도】

OG제도는 기본방향은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 교육을 통하여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활성화 시키며, 선도처분 대상이 될 만한 중대 생활 규정위반 행동을 사전 예방하는 교육활동과 징계대상 학생을 최소화 하는 교육 활동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안전지원부 담당교사는 OG카드 단계별 누가기록을 주별로 통계를 내어 매주 월요 일에 각반에 통보 관리한다.
- 2. 3단계 시스템에 따라 개인별로 처리하되 3단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누적된 기록은 소멸되며,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① OG 1차 단계별 교육 : 성찰하는 글쓰기 1장, 전공어 단어 및 문장쓰기 A4 1장
 - ② OG 2차 단계별 교육 : 상담, 성찰하는 글쓰기 1장, 전공어 단어 및 문장쓰기 A4 2장
 - ③ OG 3차 단계별 교육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 상담 장소(생활안전지원부 교무실 및 상담실)
- 3. 1, 2차 단계별 교육에 불참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추가로 벌점을 부여한다. 3차 단계별 교육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교육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사전에 공지하다.
- 4. OG 제도는 한 학기 단위로 누적 관리되며, 새 학기가 되면 다시 기록이 시작된다.
- 5. OG 3차 단계별 교육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추후 졸업시까지 표창대 상에서 제외되며,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생활규정을 수시로 어기는 다소 불성실한 학생임" 또는 "학교생활규정을 수차 어겨 학교생활에 다소 부적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임"과 같은 문구를 기록할 수 있으며, 졸업 시 각종 공로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5대 항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1회 10일 이내 "출석정지" 연간 30일 이내	퇴학
무단외출/외박	0	0	0	©	0
음주, 흡연	0	0	0	©	0
도박, 절도	0	0	0	0	0
폭력(학교폭 력전담기구에 서 처리)	0	0	0	©	0
풍기문란	0	0	0	©	0

기타 중대사안 으로 판단되 는사안(교사 폭행포함) ◎	©	©	©	0
--	---	---	---	---

- 6. 5대 항목 위반 시 조치 사항은 위 표와 같이 단계별로 적용하되, 특히 폭력이나 절도 사안과 같이 기타 심각한 중대 사안의 경우는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통해 바로 중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사안은 사안별로 학교폭력전담기구나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한다.
- 7. 또한 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생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출결상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 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기록 예시>

특기 사항-2015. 00. 0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8호에 따른 전학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예시>

특기 사항-무단 결석 5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6호에 따른 출석 정지(5일)

<학교생활기록부'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예시>

2학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6호에 따라 5일간의 교내에서 봉사 활동을 실시함

제70조【OG제도 적용기준】

OG항목	세부내용	적용내용
	복장 및 용모 규정 위반	
	학생 상호간 불손한 언행	
	껌, 침, 쓰레기 무단 투척행위	
	사전에 보고되지 않고 행해지는 집회 및 행사	OG카드
기본생활	(자기주도학습 시간 - 동아리 모임 포함)	
규정위반	교실 내 물품을 고의로 훼손 했을 경우(창문,칠판,스피커,출입문,책상 등)	
	병원 외출 시 병원확인서 미제출	
	무단으로 학교를 벗어난 경우 (외출, 외박증 미발급도 해당)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정당한 OG카드 부여 시 거부 행위(교사지시 불이행)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학교시설 비품 고의 파손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불건전한 물품 소지, 욕설	OG카드
	컴퓨터 불건전 사용(게임, 성인사이트) 유포	00/[=
건전생활	불건전한 이성교제 (교우라고 빙자하며 어두운 곳 및 외진 곳, 밀폐된 공간	풍기문란적용 시
규정위반	에 남녀학생 단둘이 있는 경우) 저녁식사시간 이후의 만남을 금지 한다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유해업소출입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집단따돌림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권소 레르 미 크네H가	
	학습 태도 및 준비불량	
	행사 무단 불참	
학습활동	남의 글귀를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발표함(표절)	OG카드
및 기타	자습실 규정 위반	00/1-
	자기주도학습 불참	
	자기주도학습 시 학습과 관련 없는 행위 적발 시(잡지, 만화보기 등)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지각	학교지각	OG카드
44	자기주도학습 지각	OG7F=
	외부음식물 배달 반입 및 취사행위	
	매점이용 후 정리불량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및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검색대 컴퓨터로 학습활동 이외 활동으로 적발 시(게임 등)	
양심	홍보물의 무단 게시, 철거	OG카드
- B 불량	교실 및 자습실 반입금지 물건 반입(음료와 쵸코렛,캔디류를 제외한 모든 음	
- "	식물)	
	수업시간 및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PDA, PMP, 노트북 등 교	
	육 목적 이외에 전자제품 사용	
	허위사유로 인한 외출, 외박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허가된 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フォー	1.상기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가 판단하기에 지도가 필요한 사	
조항에 없는	안 2.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발교사, 생활안전지원부장, 생활안전지원부 생활지도	새화교유의위히 히브
사항	담당 교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0 2 2 7 11 (2 4 4 1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 시험문제 누설	
	① 무단외출, 무단외박	
특별규정	② 음주, 흡연	
생활수칙	③ 도박, 절도, 공공기물 파손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5대 항목	④ 폭력(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처리)	
	⑤ 풍기문란 ⑥ 기타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는 행위	
	의 기의 이에 기년으로 한단하는 경기	

제71조 【OG 1단계 경감】

- 1. GG 5단계까지 1회 완성 시에는 OG 1단계를 경감할 수 있다.
- 2. 학생자치법정을 통하여 학기별 1회 OG 1단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72조 【GG 제도】

- 1. GG제도의 기본 방향은 학교 생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는 교육 활동으로 활용한다.
- 2. GG카드 5점 받은 학생에게 OG카드 1장을 상쇄해 준다.
- 3. GG카드는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1주 기준)
- 4. GG카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GG항목	세부내용	적용내용
준법성	학교와 학급의 규칙을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규칙을 준수함	
전 11 '8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GG카드
창의성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함	

협동성	절도나 폭력 행위 등 학교생활규정 위반 사항 적발에 기여함	
	창의적이고 탐구하는 자세가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근면성	학교 및 학급 활동을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책임감	단체 및 행사활동에 솔선수범함	
예절성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효행성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선행성	학교생활에 있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수업 태도가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함	
	교과활동 및 숙제를 근면하게 수행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학교 혹은 학급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	
	청소활동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	
	인사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고운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기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어르신들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실천에 옮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꾸준하게 도와줌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섬	
	선행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활동함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을 함	
	교직원이 판단하는 선행이나 솔선수범 하는 행동을 함	

제73조【이의신청】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OG카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생활안전지원부교사 또는 생활안전지원부장에게 이의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생활안전지원부 교사 또는 생활안전지원부장은 OG카드를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74조【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OG와 GG제도 관련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장 선도 조치

제75조【선도 조치 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생 선도 조치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2. 학생 선도 조치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와 선도에 중점을 둔다.
- 3. 학생 선도 조치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76조 【선도조치의 심의】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7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 【선도조치의 종류와 기간】

선도 조치의 종류에 따른 선도 조치의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1항 (2011.3.18. 일부개정)

- 1.~ 3. (현행과 같음)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9조【선도조치의 방법】

- 1.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 가) 생활안전지원부 담당교사에게 학생각서, 학부모각서, 선도처분 활동 계획서 받은 후 작성
- 나) 교내 환경 미화 노동봉사 활동 및 급식실 노동봉사 활동 실시
- 다) 매일 봉사활동 실시 후 봉사활동 담당선생님께 선도처분 확인서에 확인도장 받기
- 라) 봉사활동 종료 시 생활안전지원부 담당선생님께 선도처분 활동 확인서 제출
- 2. "사회봉사"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봉사활동 명령서를 받아 활동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담임을 경유하여 생활안전지원부로 제출하고, 봉사활동의 확인지도는 매일 담임교사가 시행한다.
 - 가) 생활안전지원부 담당교사에게 학생각서, 학부모각서, 선도처분 활동 계획서 받은 후 작성
 - 나) 봉사 기관에 가서 봉사 활동 실시
 - 다) 매일 봉사활동 실시 후 봉사활동 담당선생님께 선도처분 확인서에 확인도장 받기
 - 라) 봉사활동 종료 시 생활안전지원부 담당선생님께 선도처분 활동 확인서 및 봉사 활동 확인서 제출

3. "특별교육 이수"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 후 확인서를 생활안전지원부로 제출하고, 생활안전지원부에서 확인 지도한다.

단, 특별 교육 이수 대상 학생의 경우는 기숙사 선택 불가능(가정 교육과 특별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특별 교육 이수 학생 단기 위탁 교육 기관 봉사 기관이나 단체를 학부모님과 상의 후 선정, 하루 8시간 봉사 활동 실시.

이메일로 매일 선도처분 활동확인서 담임 교사에게 제출, 선도처분 후 봉사활동 확인 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4. "출석정지" 1회 부과시 10일 이내로 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듀업 지원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이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8항 (2011.3.18. 일부개정)

-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 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		에듀업 지원센터		에듀업 지원센터	에듀업 지원센터		학교
위기학생 상담 • 교육의뢰	\Diamond	학생 심리 정서 진단	分	학생・학부모 상담, 치료	전문기관 연계 교육결과 송부	Û	추수상담 학교적응 지원

6. '퇴학'은 도저히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규정 위반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하며, 학교의 장은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제80조【선도조치 절차】

- 1. 모든 징계는 담당교사의 진술서와 담임교사의 학생 신상에 관한 의견진술을 토대로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학생 및 학부모를 참석시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이루어짐을 확인시키도록 한다.
- 3.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담당교사는 징계내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학생 징계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4.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u>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u>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

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학생 및 보호자가 징계 내용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재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협의를 한 후 징계를 재확정 할 수 있 다.

- 5. 재심 결정 후에는 3항의 절차에 따른다.
- 6. 징계 기간은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산정하며 학교장 부재 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교감)이 징계권을 대행할 수 있다.
- 7. 학교장은 필요시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다.
- 8. 선도 기간 중이라도 정기고사에는 임하게 하며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 9. 선도 기간은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1조【심의 확정】

- 1. 학생 선도 조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2. 학교의 장은 제47조에 따라 선도조치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 담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8항 (2011.3.18. 일부개정)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2조【선도처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고 선 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83조【선도처분 유보】

특별 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4조【선도처분 경감】

학교장은 징계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5조 【선도 받은 학생의 효력】

학교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은 추후 졸업시까지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 자치회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선도조치는 단계별로 3년간 누적 관리된다.

제86조【임원 학생에 대한 선도】

학급 대의원 이상의 임원 학생이 선도를 받을 경우에는 선도 받은 날로부터 재신임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87조【선도처분 해제】

징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해벌되며, 해벌은 징계기간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징계 담당교사 및 선도교사와 협의하여 생활안전지원부장교사가 학교장에게 해벌을 건의하여 결재를 받아 해벌될 수 있다.

제88조 【선도처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학교폭력전담기구

제89조 【학교폭력전담기구 설치·구성】

- 1. 전담기구의 구성
- 가. 관련 조항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방법
- ①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장이 구성
- ②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가 1/3 이상이어야 함
- ③ 전담기구 심의방법,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전담기구 인원(예시)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2명	3명	3명	3명	4명	4명
역구도 구	이상						

다. 전담기구 조직(총원: 8명)

구분	직위	비고
위원장	교감	교원위원
위원	생활안전지원부장	교원위원
위원	학교폭력책임교사	교원위원
위원	학부모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위원	학부모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위원	학부모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위원	보건교사	교원위원
위원	전문상담교사	교원위원

제90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가.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
- 나.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 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직 및 업무분장>

교감 : 총괄 책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2) ●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 학교폭력 사안 조사 피해 상황 파악 ● 사안조사 내 -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 - 목격자, 담임교사. 용을 바탕으로 를 위한 요양 등 지원 학년부장교사,전문상 학교장 자체해 담교사 등 협조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결 여부 심의 - 피해 및 가해사실, 이송 조사 진행 상황을 육 *병원 이송 시 동행 ●그 밖에 학교 하원칙에 따라 기록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비용 지 장이 정하는 사 - 증인 및 증거 자료 원 업무 담당 확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 필요시 조사 결과 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 ●집중보호 및 관찰대 담 및 조언 상 학생에 대한 지속 -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 적인 상담 및 기록 관 파악, 필요 시 심리검사 실시 리 -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심의위

- 2. 교육(지원)청 보고
- 가.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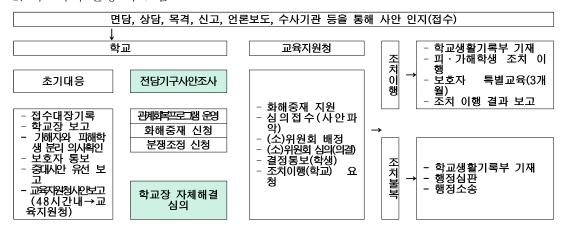
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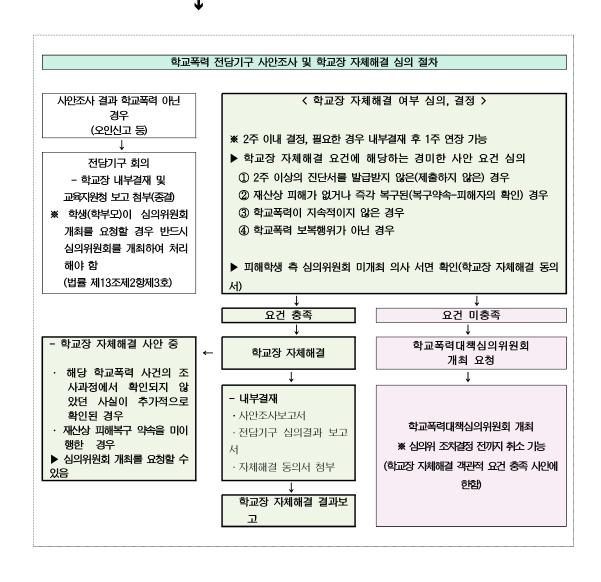
- 긴급하거나 중대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 나.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함.
- 3. 학교폭력 사안조사
- 가. 학교폭력은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 4. 사안조사 결과보고
- 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 장에게 보고함.
- 5.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가.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고자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함.
- 6.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가.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 심의
- 나.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 7.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가.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 조)

제91조 【학교폭력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1. 학교폭력 발생 시 흐름도





2. 학교폭력 사안처리 핵심 체크리스트(학교 확인용)

학교명	00학교	담당자	(교육지원청) 000	담당자 연락처	(교육지원청) 031-000-0000
			(학교) 000		(학교) 031-000-0000
사안유형		발생일시	2023.00.00.()	접수번호	2023-00호

구분	점검사항	확인서식	점검결과		
	1. 학교폭력 사안 신고접수 확인	< II -(I)>	□ 접수 □ 미접수 □ 기타()		
	2. 학교장 보고 확인	/Π-(D)	□ 보고 □ 미보고 □ 기타()		
	3.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	< II -@3>	□ 동의 □ 미동의 □ 기타()		
	4.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확인		□ 통보 □ 미통보 □ 기타()		
	5. 학교폭력 사안보고 확인(48시간 이내)				
학교 초기 대응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한셀파일에 작	<ii-@⑤></ii-@⑤>	□ 보고 □ 미보고 □ 기타()		
	성)				
	6. 사안조사 확인	⟨∏-(1)(12)(3)⟩	□ 조사 □ 미조사 □ 기타()		
	7. 단위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확인	<Ⅲ-①②>	□ 안내 (신청일:)		
	8. 화해중재 안내 확인	⟨Ⅲ-③④⟩	□ 안내(신청일:)		
		000			
	9. 긴급조치 여부 확인	<ii-89@></ii-89@>	□ 피해학생(제 호) □ 가해학생(제 호)		
	1. 학교폭력 아닌 사안인 경우		□ 오인신고 □ 기타()		
	- 전담기구 회의 내부결재 후 교육지원청	<iv-(1)(2)(3)(4)></iv-(1)(2)(3)(4)>	□ 내부결재 및 보고: 2023. 00. 00.		
	보고 확인	(11 6 6 6 6 6)			
	2.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 경우				
	- 학교폭력전담기구 개최 확인		□ 개최일: 2023.00.00.		
	- 사안조사 및 심의결과보고서 확인	<iv-6890< td=""><td>□ 작성 □ 미작성 (작성일: 2023.00.00.)</td></iv-6890<>	□ 작성 □ 미작성 (작성일: 2023.00.00.)		
사안	- 자체해결 동의서 확인	4866668>	□ 동의 □ 부동의 (제출일: 2023.00.00.)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확인	A CONTRACTOR OF A	□ 내부결재: 2023. 00. 00.		
및	- 교육지원청 보고 확인		□ 최종보고: 2023. 00. 00.		
처리	3.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안인 경우				
결과	시아이의 하지 하다 하다		□ 긴급조치보고서 □ 학생 확인서		
	- 심의위원회 제출서류 확인 	<iv-6890< td=""><td>□ 보호자 확인서 □ 사안조사보고서</td></iv-6890<>	□ 보호자 확인서 □ 사안조사보고서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49222	□ 심의결과보고서		
	8 1/12=1 1 11 12 3	2A>	□ 피·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V#/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한셀파일에 작성)		
	- 개최 요청 취소		□ 요청일: 2023. 00. 00.		
	1. 심의위원회 개최일		- □ 개최일: 2023, 00, 00,		
	2. 심의결과 및 조치 이행 안내	< V -①>] □ 개최글: 2023. 00. 00. - □ 통보일: 2023. 00. 00.(지원청 —학교)		
	3. 피·가해학생 조치결정 통보서	<∇-@>	□ 8エ2・2020: 00: 00:(利2·8 · ¬皿)		
	4. 기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기재 확인	< V -@@>	□ 기재 □ 미기재 □ 기타()		
조치 이행 -	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확인		□ 기재 □ 미기재 □ 기타()		
	6. 관련학생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피해학생이 원할		│ │ □ 피해학생(제 호). 기관명:		
	시)	< V -40003	1에크(V에 포/, 시단()*		
	 - 기해학생에 대한 조치	456789	□ 가해학생(제 호) □ 특별교육이수 00시간		
	기에북(3에 대한 <u>조</u> 사	20>	- 기관명: - 기관명: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특별교육이수 00시간, 기관명:		
	 7. 피·기해학생 조치시항 이행 완료 보고	<v-\$67@></v-\$67@>	│ │□최종보고: 2023. 00. 00.		
	. 그 시에그의 자꾸지를 위한 근표 포포	L-10-1 2020. 00. 00.			

제92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 다.

제93조 【비밀누설금지 등】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4조 【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가) 담임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나) 학교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 다)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217)
- 라)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 마)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바)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사)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4. 폭력 피해학생·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정하는 결정을 따른다.

제95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사가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96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1.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 중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 런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

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에 학생 위원으로 참여한 학생을 학생 대표로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 6.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인가를 득한 후 공포한다.
- 7.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8. 최종 확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 9.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10.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개정심위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11.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 불만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한다.
- 12. 위원회는 매 학년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연간 학교생활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외 안건]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본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과 상충될 때 고시내용을 반영한 제1장(총칙), 제2장(생활지도의 범위), 제3장(생활지도의 방식)이 우선한다.)